

제 5 장 통관 절차

제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업적 수입이라 함은 판매, 또는 상업적, 산업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용도를 목적으로 한 일방 당사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법령의 운용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판정이라 함은 상품이 제4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정하는, 원산지 검증 과정의 결과로서 내려진 결정을 말한다.

수출자라 함은 제5.4조에 따라,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 수출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한다.

동일 상품이라 함은 관세평가협정에서 정의된 “동일 상품”을 말한다.

수입자라 함은 제5.4조제5항에 따라,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한다.

재료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조정가격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조정가격”을 말한다.

통일규칙이라 함은 제5.12조에 따라 제정된 “통일규칙”을 말한다.

사용된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사용된”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라 함은 관세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또는 제4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의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제5.2조 원산지 증명서 및 신고서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시까지 원산지 증명서의 단일 형식과 원산지 신고서의 단일 형식을 확정하며, 이 형식들은 이후 양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증명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3.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가 영어로 작성되고 서명될 것을 요구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에 대해, 타방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이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할 대상인 당해 상품의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나.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 수출자가 다음을 기초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지식,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자신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3)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

5.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수출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고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6.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가 당사국 영역내로의 단 한번의 수입에 적용됨을 규정한다.

7. 이 협정이 발효되는 일자 또는 그 후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출자에 의해 발효 일자 이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한다.

8. 각 당사국은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권한있는 정부당국 또는 정부에 의해 위임된 기관이 승인하는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제5.3조 수입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하는 자국의 영역내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수입 문서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
- 나. 가호에 따른 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지참할 것,
- 다.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구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 그리고
- 라. 신고가 기초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지불해야 할 관세를 지불할 것. 수입자가 이러한 모든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수입자가 이 장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요구를 기각할 것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그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지불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수입될 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
- 나.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그리고
-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다른 문서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하는 수입자가 당해 상품의 수입 일자 이후 5년간 또는 당해 당사국이 명시하는 더 장기간 동안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이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문서를 자국 영역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제5.4조 수출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제5.2조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했던 자국 영역내의 생산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사본을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서명하고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진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안에 따라 관세행정기관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모든 인들에게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한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부정확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제2항에 언급된 통보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자국의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허위 증명서가, 허위 진술 또는 허위 표시에 관한 관세법령 위반에 대하여 자국 영역내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결과를 갖도록 적절한 수정을 거쳐 규정한다.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그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상황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사항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특혜관세대우가 요구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일자로부터 5년간, 또는 당사국이 명시하는 더 장기간 동안 자국 영역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가.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당해 상품의 구입, 비용, 가격 및 이에 대한 지불,

나.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입, 비용, 가격 및 이에 대한 지불, 그리고
다. 당해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제5.5조 예외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이 제5.2조와 제5.3조의 증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준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가. 가격이 미화 1,000불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상업적 수입, 다만, 당사국은 수입에 수반되는 송장에 상품의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가격이 미화 1,000불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설정하는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비상업적 수입, 또는

다. 자국의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경우 그 국가로의 당해 상품의 수입.

제5.6조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한 송장 작성

거래되는 상품의 송장이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해 작성될 때, 원산지 당사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각 원산지 증명서의 비고란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그 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 작성될 것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영에 대한 송장을 작성할 운영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제5.7조 비밀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수집된 비밀 영업 정보의 비밀성을 자국법에 따라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이 장에 따라 수집된 비밀 영업 정보는 원산지 판정과 관세 및 조세 문제의 행정 및 시행에 책임있는 당국에만 공개될 수 있다.

제5.8조 원산지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출 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검증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및 필수정보 요청,

나. 제5.4조제5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 또는 그러한 취지로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를 관찰하기 위한 타방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

3. 제2항 가호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질의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과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동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단 한차례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초 기간의 연장을 수입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주어진 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한 질의서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 관세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제2항 나호에 따른 실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가. 방문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다음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방문할 예정인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그리고

(3) 타방 당사국의 요청시 실사를 요청한 수입 당사국의 영역에 주재하는 타방 당사국 대사관, 그리고

나. 방문 대상인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6. 제5항에 언급된 통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통지를 발급한 관세행정기관,
- 나. 방문대상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 다. 예정된 실사 일자 및 장소,
- 라.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포함한, 예정된 실사의 대상 및 범위,
- 마. 실사를 수행하는 담당관들의 성명 및 직함, 그리고
- 바. 실사에 대한 법적 권한.

7.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안된 실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 당사국은 실사 대상인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8. 각 당사국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그 통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양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더 장기간 동안 예정된 실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차례 할 수 있다. 이 목적상, 연기는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지될 수 있다.

9. 일방 당사국은 제8항에 따른 실사의 연기만을 근거로 하여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10. 다음의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의한 실사의 대상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실사동안 입회할 2인의 참관인을 지정하도록 허용한다.

- 가. 참관인은 참관인 자격 이외의 방식으로 입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참관인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실사 연기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11. 제4장의 규정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관련될 수 있는 역내 가치포함 비율, 최소 허용 수준 산정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규정과 관련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상품의 수출당사국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검증이 종결된 후, 검증을 실시한 관세행정기관은 사실 조사 결과 및 판정에 대한 법적 기초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내용을 검증 대상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3. 당사국의 검증을 통해 수출자나 생산자가 그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표시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드러날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인이 제4장의 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동 인에 의해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동일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1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에 대해 타방 당사국이 적용하고 있는 것과 상이한 자국의 관세 분류 또는 가치를 적용한 결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 당해 상품의 수입자 및 그 상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는 이러한 판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15.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사국은 제14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 일자 이전에 행해진 수입에 대해 그러한 판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타방 당사국의 주무당국이 관세 분류 또는 그러한 재료의 가치에 대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판정이나 또는 그 밖의 판정을 내리거나, 이러한 기관이 당해 재료 반입에 대해 문제의 관세분류 또는 가치에 입각하여 일관된 대우를 부여해 왔으며, 이러한 대우를 당해 인이 의존할 자격이 있을 것, 그리고

나. 이러한 사전 판정, 그 밖의 판정 또는 일관된 대우가 당해 판정의 통지 이전에 주어졌을 것.

16. 일방 당사국이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품의 수입자 또는 그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인이 당해 재료에 대해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적용한 관세분류 또는 가치에 선의로 의존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거부의 발효일자를 연기한다.

제5.9조 원산지 사전 판정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시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사전 판정서를 자국의 주무당국을 통하여 자국 영역내의 수입자 또는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가. 상품이 제4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비당사국로부터 수입된 재료가 일방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만 행해진 생산의 결과로서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쳤는지 여부,
- 다. 상품이 제4장에 규정된 공제법 또는 직접법에 따라 역내 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라. 상품이 제4장에 따른 역내 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그 상품 또는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조정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 원칙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할 가치에 대한 적절한 기초 또는 방식,
- 마. 상품이 제4장에 따른 역내 가치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중간재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통일규칙에 규정된 할당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적절한 기초 또는 방식,
- 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된 후 자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3.7조에 따라 무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또는
- 사. 양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제.

2.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 신청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여 사전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주무당국이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규정한다.

- 가. 사전 판정 신청에 대한 평가 과정 동안 언제라도 판정신청인에 대해 보충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사전 판정 신청인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통일 규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판정을 내린다. 그리고
- 다. 사전 판정이 그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그 인에게 설명한다.

4.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을 신청한 상품의 자국 영역으로의 수입에 대해 판정 일자부터 또는 판정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부터 사전 판정을 적용한다.

5. 사실과 상황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할 경우,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을 요청한 모든 인에게 원산지 판정에 관한 제4장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여 자국이 사전 판정을 내린 다른 모든 인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한다.

6. 사전 판정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가. 판정이 다음에 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
 - (1) 사실,
 - (2) 판정의 대상인 상품 또는 재료의 관세분류,
 - (3) 제4장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 요건의 적용, 또는
 - (4)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된 후 자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3.7항에 따른 무관세 대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판정을 위한 규칙의 적용,
 - 나. 판정이 제3장 또는 제4장에 관하여 양 당사국에 의해 합의된 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판정이 근거로 한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라. 제3장, 제4장, 이 장 또는 통일규칙의 수정에 따르기 위한 경우, 또는
 - 마. 사법 또는 행정 결정 또는 국내법상의 변경에 따르기 위한 경우.

7.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그 조건과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그 변경이나 철회가 이루어진 일자에 또는 그 변경이나 철회에 명시된 더 늦은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그 일자 전에 발생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선의로 그 판정에 의존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사전 판정 당사국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변경 또는 철회의 발효 일자를 연기한다.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주무당국이 제1항 라호, 마호 및 바호에 따라 사전 판정을 내린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 비율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의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 가. 수출자나 생산자가 사전 판정의 조건을 준수해 왔는지,
- 나. 수출자나 생산자의 작업이 사전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실과 상황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 다. 가치 산정 또는 비용 할당을 위한 기초 또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사용된 보충 자료와 계산이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정확한지.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계당국이 제9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관련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사전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1.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판정이 기초한 사실과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선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국의 관계당국이 그 판정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판정을 받은 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12. 각 당사국은 판정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을 허위 진술했거나 또는 이를 빠뜨렸거나, 또는 당해 판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인에게 사전 판정을 내리는 경우, 그 당사국은 관련상황이 허용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3. 당사국은 판정의 기초가 되었던 실질적인 사실 또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에만 판정을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은 사전 판정 당국이 제6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14. 원산지 검증 과정의 대상이거나 양 당사국들 중 하나의 영역에서 재심 또는 상소의 대상인 상품은 사전 판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0조 심사 및 상소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자국의 영역내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권리인 원산지 및 사전 원산지 판정에 대한 심사 및 상소의 권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여한다.

- 가. 제5.8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을 것, 또는
- 나. 제5.9조에 따라 사전 원산지 판정을 받았을 것.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심사 및 상소 권리가 다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가. 심사 대상인 판정에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한 단계의 행정적 심사, 그리고
-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정적 심사의 최종 단계에서 취해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제5.11조 벌칙

1.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2. 제5.3조제1항 라호,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8조제4항, 제5.8조제7항 또는 제5.8조제9항의 규정은 당사국이 여건상 허용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12조 통일규칙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후 제3장, 제4장, 이 장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고 각자의 국내법령을 통해 이행한다.

2. 통일규칙이 발효한 후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통일규칙의 변경 또는 추가에 합의한 후 18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간에 합의된 그 밖의 기간 이내에 그러한 변경이나 추가사항을 이행한다.

제5.13조 협력

1. 각 당사국은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사항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포함하여 다음의 결정, 조치 및 판정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가. 제5.10조에 따른 심사 및 상호 절차가 소진되었을 경우, 제5.8조에 따라 행해진 검증의 결과로서 내려진 원산지 판정.

나. 당사국이 다음에 반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원산지 판정

(1)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관세분류나 가치, 또는 상품의 가치 계산시 비용의 합리적 할당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판정, 또는

(2)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관세분류 또는 가치, 또는 상품의 가치 계산시 비용의 합리적 할당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부여한 일관성 있는 대우,

다. 앞으로의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격하게 변경하는 조치, 그리고

라. 제5.9조에 따른 사전 판정, 또는 사전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판정.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 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통관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상호세관협력협정 또는 그 밖의 통관 관련 협정에 따라,
- 나.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양 당사국간 무역의 흐름을 촉진할 목적상, 상품의 수입 및 수출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교환,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작업의 조화,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국제적 데이터 구문의 수락 그리고 정보 교환과 같은 그러한 통관 관련 사안에 있어서,
- 다.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관 관련 문서의 저장 및 전송에 있어,
- 라. 수입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대해 자국의 영역내의 검증 과정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 마. 일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상품의 불법적인 선적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강구하는데 있어, 그리고
- 바. 통관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및 세관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는 관세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데 있어서.

제5.14조 검토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제2차 연도에 양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원산지 신고 또는 증명과 관련한 체제를 심사하고 개정한다.